

여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법 제11조의2 신설)

(1)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

2006년10월27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를 “의료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醫師”를 “의사 [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로, “환자에게”를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檢視)를 행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患者를”을 “환자 또는 사망자를”로, “患者의”를 “환자 또는 사망자의”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준수사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第4項”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신의료기술평가**

제45조의3(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 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4 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 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 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의 료기술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 다.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 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의 공무원
-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

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4.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선택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사업 수익의 회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료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민원제기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장례식장 및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0월27일

국 무 총 리 한 명 속

국 무 위 원 유 시 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법률 제8068호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일부개정법률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保健産業振興院法”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으로 한다.

제6조제9호를 제11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 신기술 인증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안전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제품 품질인증 사업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국 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